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2018. 12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8년 12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18년 12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18년 12월 14일
-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광기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한시기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종료(2018.12.31.까지)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3,866명 (변동없음)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 - 소방직 : 2,070명 (변동없음)
 - ▶ 소방정 : △1명(18 → 17)
 - ▶ 소방령이하 : +1명(2,052 → 2,053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호식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10일 개막되어 2018년 9월 17일 폐막된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위해 조직된 한시기구인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주요내용은 한시정원 중 소방정 1명과 소방령 2명을 소방경 2명과 소방위 1명으로 직급 조정을 하는 것임. 한시정원 5명을 정원 변동없이 현안·현장 대응 업무 위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108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12월 일 (제369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2월 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08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2월 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한시기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종료(2018.12.31.까지)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3,866명 (변동없음)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 - 소방직 : 2,070명 (변동없음)
 - ▶ 소방정 : △1명 (18 → 17)
 - ▶ 소방령이하 : +1명 (2,052 → 2,053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
총 계	3,866			-		
정무직 계	1	1				
도지사	1	1				
일반직 계	1,544			-		
1~2급	1					1
2~3급	2	1	1			
3급	10	8		1		1
3~4급	2	2				
4급	71	47	7	5	7	5
5급이하 소계	1,441			-		
전문경력관 소계	17			-		
별정직 계	12			-		
1급 상당	1	1				
4급 상당	3	3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8					
연구직 계	169			-		
연구관	31	1		28	2	
연구사	138			-		
지도직 계	27			-		
지도관	6			6		
지도사	21			-		
소방직 계	2,070			-		
소방정	17	5		12		
소방령이하	2,053			-		
교육공무원 계	43			-		
총장	1			1		
교수 · 부교수 · 조교수 · 전임강사	30			30		
조교	12			-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관 계 법 령 발 췌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 · 도의 5급 이하(시 · 군 · 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~ ⑤ (생략)